



제18859호 2016. 10. 10.(월)

## 【부 령】

○환경부령제676호(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)..... 5

## 【고 시】

- 금융위원회고시제2016-37호(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) ..... 6
-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-107호(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)..... 6
- 환경부고시제2016-195호(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·정기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) ..... 7
- 국토교통부고시제2016-652호(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) ..... 8
- 국토교통부고시제2016-655호(2016년도 건물·교통·건설업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업체<변경>) ..... 9
-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-50호(국적취득)..... 9
-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-28호(국적취득)..... 9
-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-55호(국적상실)..... 10
-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-56호(국적취득)..... 11
-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10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 ..... 11
-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11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 ..... 12
-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12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 ..... 12
-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13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 ..... 13
-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14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 ..... 13
-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15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 ..... 14
-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16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 ..... 14
-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17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 ..... 15
-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18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 ..... 15
-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19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 ..... 16
-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20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 ..... 16
-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21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 ..... 17
-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22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 ..... 18
-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23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 ..... 18

(이면 계속)
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24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19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25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19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26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0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27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0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28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1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29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1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30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2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31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2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32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3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33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3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34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4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35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4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36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5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37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5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38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6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39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6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40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7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41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7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42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8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43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8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44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9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45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29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46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30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47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30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48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31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49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31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350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)	32
○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-349호(도로구역 결정<변경>)	39
○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-440호(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)	41
○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-444호(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)	41
○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-342호(하천구역 결정<변경> 및 지형도면)	42
○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-343호(금강<대청댐저수지~조정지댐> 하천기본계획)	42
○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-211호(지정정비사업장 효력정지)	45
○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-212호(항로표지 현상변경)	45
○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-213호(시설항로표지 기능정지<좌초 1기, 유실 2기>)	47
○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-49호(항로표지 신설)	47
○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-112호(항로표지 기능정지)	47
○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-175호(하천수 사용허가)	48
○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-176호(하천공사<하천수사용> 실시계획인가)	48
○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6-17호(우체국 폐국)	49
○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-352호(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)	49
○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-357호(한국산업표준 폐지)	51

## 【공 고】

○국민안전처공고제2016-322호(해양오염방제 자재·약제 형식승인) .....	52
○금융위원회공고제2016-302호(전자금융업 등록).....	52
○금융위원회공고제2016-303호(금융투자업 등록).....	52
○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-239호(비영리민간단체 등록).....	53
○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-521호(공시송달) .....	53
○환경부공고제2016-733호(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<안> 재입법예고) .....	54
○환경부공고제2016-735호(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<안> 입안예고) .....	55
○환경부공고제2016-737호(2016년 8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).....	56
○환경부공고제2016-739호(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<안> 입안예고) .....	58
○국토교통부공고제2016-1330호(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) .....	58
○국토교통부공고제2016-1341호(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<안> 입법예고) .....	59
○국토교통부공고제2016-1342호(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<안> 입법예고) .....	60
○해양수산부공고제2016-692호(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) .....	61
○농촌진흥청공고제2016-334호(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<안> 입법예고) .....	61
○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-145호(은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<독촉>고지서 공시송달) .....	62
○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-116호(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) .....	64
○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-77호(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).....	64
○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-78호(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 공시송달).....	65
○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-79호(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 공시송달).....	65
○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-80호(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 공시송달).....	67
○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-105호(시정 권고 재결).....	68
○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6-137호(공시송달) .....	68
○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-15호(공시송달).....	69
○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6-279호(한국산업표준<KS> 인증대상 품목지정).....	70

## 【법 원】

○판결(창원지방법원·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) .....	71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## 【지방자치단체】

○충청북도고시제2016-248호(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).....	75
○충청남도고시제2016-335호(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지정<개발계획>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).....	75
○경기도공고제2016-1073호(측정대행업 신규등록) .....	85
○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-267호(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).....	85

## 【상 훈】

○서훈(보건복지부) .....	87
------------------	----

## 【기 타】

○압수물환부공고(서울중앙지방검찰청) .....	87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### ●환경부공고제2016-739호

「기존화학물질」 고시 개정(안) 입안예고

「기존화학물질」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0월 10일

환 경 부 장 관

#### 1. 개정 이유

중전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에서 유해성 심사를 신청한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사 완료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16년 2분기 및 3분기에 3년이 경과된 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고자 함

#### 2. 주요 내용

가. 유해성 심사가 완료('13.4.1~'13.9.30)된 물질 중 3년이 경과한 물질 추가 고시(10종)

고유번호 2016-3-7176란에서 2016-3-7185란까지 신설

#### 3. 의견 제출

「기존화학물질」 고시안(붙임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화학물질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(우편번호 : 30103)

※ 자세한 사항은 전화(044-201-6784, 6785), FAX(044-201-6786) 또는 전자우편(ifanger@korea.kr, hanal@korea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●국토교통부공고제2016-1330호

「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」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,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4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10월 10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

#### 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(법인명) : ① (주)한국지오택

나. 전화번호 : ① 031-8018-2485

#### 2. 지정번호 : 신기술 제644호

#### 3. 명칭 : AGS(Automatic Grouting System)를 이용한 그라우팅 관리기술

## 4. 내용요약

## &lt;기술의 요지&gt;

이 신기술은 AGS(Automatic Grouting System)을 이용하여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기술로, 주입지반의 시공조건평가, 주입압(p), 주입속도(q), 시간(t) chart 검측 및 지반탐사, 주입시공 자동관리, 원격 관리하는 공정으로 구성된다.

## &lt;범위&gt;

AGS(Automatic Grouting System)을 이용하여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기술

5. 보호기간 : 2012.02.24 ~ 2017.02.23. (5년)

6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481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## ●국토교통부공고제2016-1341호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0월 10일

국토교통부장관

**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**

## 1. 개정이유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의 사업구역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) 관련 조항 신설(법률 제13800호, 2016.1.19. 공포)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명시하고, 심의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(안 제3조의2)

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사업구역 심의의 대상으로 함

나.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기준 (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)

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,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, 교통 분야 경력자 및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, 비위,